

## TRADE BRIEF

## 신성장연구실

이준명 연구원 02-6000-5463, brainchild@kita.net  
박준실 장 02-6000-5172, skybird@kita.net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 영국 사례를 통해 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혁신 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의 구체적 기대효과를 예측해보기 위해 우리나라와 기본 운영방식이 유사한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규제 샌드박스에 참가한 핀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출시기간 단축, 서비스 성능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시험운영 종료 후 투자유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국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전략 구체화에 힘써야 하고, 정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관련부처 간 신속한 합의점 도출, 적극 행정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공조를 통해 해외진출 등 사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01. 국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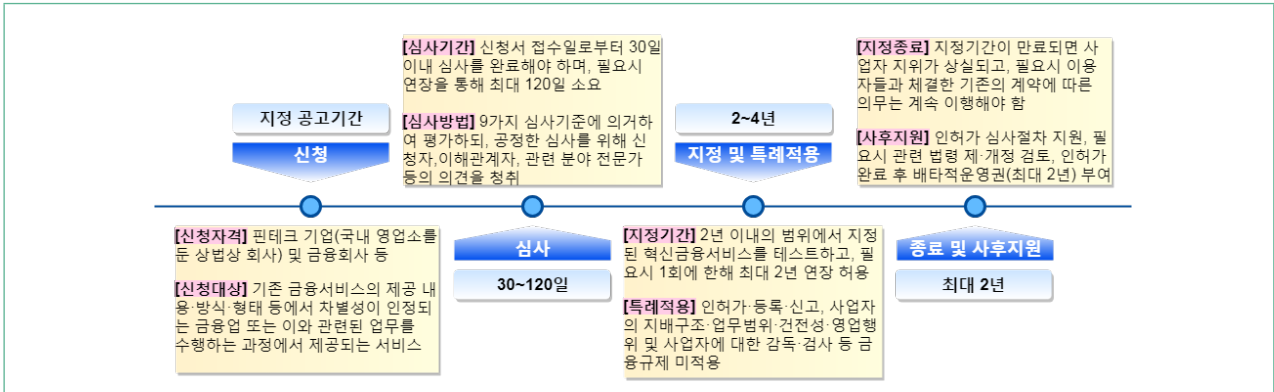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sup>1)</sup>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1+4법’<sup>2)</sup> 중 핀테크 분야에 적용되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 모집에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88개사가 총 105건의 금융서비스를 제출하였고, 이중 19건이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됨(19.4.1)
    - 이는 산업·정보통신 분야 초기 신청건수(19건)의 5배가 넘는 사전신청 건수로, 금융 분야에서의 높은 규제 체감도가 예상보다 많은 신청 접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어려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심사기준**<sup>①</sup> 통과 시 인허가·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여, 지정기간(기본2년+연장2년) 내 서비스의 시험 운영(테스트)을 **제한적으로 허용**<sup>②</sup>하고 **지원**<sup>③</sup>하는 제도
  - (심사기준)<sup>①</sup>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주된 활동 여부<sup>3)</sup>,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방안의 충분성 등 총 9가지 심사기준으로 구성
  - (제한적 허용)<sup>②</sup> 금융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를 감안하여 이용자 범위 및 이용자 수, 건별 거래금액 및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제한을 설정
  - (지원 및 보상)<sup>③</sup>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 테스트 비용(일부),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획득

1) 신제품·서비스,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의 규제체계

2) 행정규제기본법(1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이상 4법)

3) 해외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도 국내 법인이 존재하고 국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금융 규제 샌드박스 주요 절차별 핵심내용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02. 영국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운영사례 분석

- 영국은 유럽의 금융혁신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Project Innovate)<sup>4)</sup>’의 일환으로, '15년 11월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 분야에 도입
  -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의 비교할 때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소비자 보호장치 관련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 운영방식은 대체로 유사

### 영국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개요

- **(운영주체)**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 **(운영방식)** 매년 두 차례씩 기수(cohort)별로 선발하여 3~6개월간 테스트 허용
- **(심사기준)** 영국 내 사업영위 여부,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테스트 필요성 및 준비성
- **(구성요소)** 5가지 샌드박스 수단(Sandbox tool)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지원
  - 제한인가, 개별지도, 규제 특례적용 및 수정, 비조치의견서, 지정대리인
- **(소비자 보호장치)** 개별 기업이 자사 서비스의 잠재 위험유형(risk profile)에 맞게 직접 설계
- **(운영현황)** '16년 7월(1기)부터 '18년 7월(4기)까지 2년간 총 276개사의 신청기업 중 89개사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어 테스트를 실시했고, '18년 11월 5기 선발 완료

자료 : 영국 금융감독청(FCA) 홈페이지 및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18.2) 참고

- 영국 규제 샌드박스 1기('16.7~'17.1) 및 2기('17.1~'17.7) 지정 기업의 테스트 성과 분석<sup>5)</sup>
  - **(테스트 시행)** 총 146개의 신청기업 중 50개사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41개사(1기 18개+2기 24개)<sup>6)</sup>가 테스트를 시행하여 테스트 성사율은 약 82%로 나타남
    - 테스트를 시행한 41개사 중 39개사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2개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
  - **(시장 진입)** 1기 지정기업 중 약 90%(16개사)가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 정식 출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됨(FCA, '17.10 기준)

4)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해 '14년 10월부터 개시한 프로젝트형 정책

5) 영국 금융감독청(FCA)가 '17년 10월 발간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 결과보고서(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의 내용을 토대로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투자 유치성과는 연구자가 직접 산출

6) 1기와 2기에 중복 선발된 기업(Nivaura)이 존재하여 총 41개사로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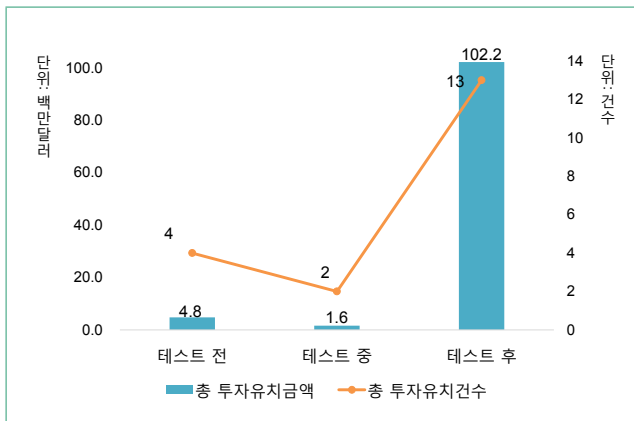
- (투자 유치) 1기와 2기의 테스트 전, 중, 후 투자유치 성과를 각각 추적 분석한 결과, 양 기수 모두 테스트 이후 투자 유치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수) 테스트 종료 후 1기와 2기의 총 투자유치 건수는 각각 5개사 13건, 7개사 11건으로 테스트 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테스트 기업의 약 30%가 투자유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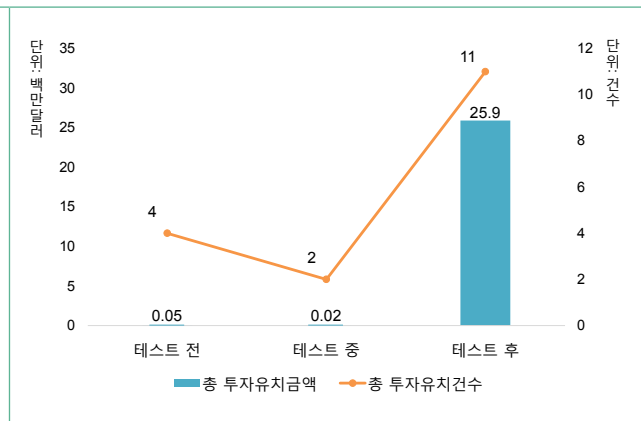
- (금액) 테스트 종료 후 총 투자유치 금액은 1기 102.2백만달러, 2기 25.9백만달러로 테스트 전 대비 각각 21배, 518배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건당 평균 유치금액 또한 1기는 6.6배, 2기는 188배 증가함

\* 이와 같은 대폭적인 증가율은 일부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기인<sup>7)</sup>

영국 규제 샌드박스 1기 투자유치규모



영국 규제 샌드박스 2기 투자유치규모



영국 규제 샌드박스 1기 및 2기 테스트 기업 투자유치 현황

구분	투자유치 현황	테스트 전(A)	테스트 중	테스트 후(B)	증가율(% B/A)	
1기 (18개사)	총 투자유치 건수	4	2	13	225	
	투자유치 금액 (백만달러)	총합	4.80	1.63	102.2	2,027
		건당 평균	1.20	0.82	7.86	555
	동기간 영국 전체 핀테크 기업 총 투자유치 금액(백만달러)		1,490.0	272.0	3,450.0	132
2기 (24개사)	총 투자유치 건수	4	2	11	175	
	투자유치 금액 (백만달러)	총합	0.05	0.02	25.9	51,700
		건당 평균	0.01	0.01	2.35	18,736
	동기간 영국 전체 핀테크 기업 총 투자유치 금액(백만달러)		1,630.0	514.4	3,500.0	115

주1) 기간은 테스트 진행기간(테스트 중) 6개월과 테스트 전, 후 각 2년(2기의 경우 테스트 후 현재시점까지)으로 설정  
 ※ 동일한 기수 내에서도 심의 소요기간 등에 따라 기업별로 테스트 기간이 상이한 관계로 테스트 기간은 해당 기수의 모집 월 1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일괄 적용함

주2) 투자유치 규모는 벤처캐피탈 기반 자본투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정부보조금, 대출, M&A, IPO 및 영국 금융 감독청(FCA) 투자 건은 제외함

통계 : CB Insight('19.3.20)

7) 이례적인 대규모 투자유치건(1기 Nested사 25.82백만달러, 47.50백만달러; 2기 Nivaaura사 20백만달러)을 제외하면 테스트 종료 후 투자유치 금액의 증가폭은 1기 6배, 2기 118배, 건당 평균 유치금액의 증가폭은 1기 1.9배, 2기 43배로 나타남

◎ 영국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업 투자유치 성공사례

■ [사례1] Nivaura - 1기 및 2기 테스트 참여, 4기 테스트 기업의 협력사로 참여

- 니바우라는 금융상품(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의 발행 및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금융기관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채권의 상용화 가능성을 테스트하여 '18년 3월 FCA로부터 완전 인가를 받았으며, 테스트 종료 후 20백만달러의 대규모 투자유치(19.2) 등 총 4건의 투자유치에 성공

■ [사례2] Nested - 1기 테스트 참여

- 네스티드는 인터넷 기반 부동산 중개 전문 스타트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매도가 측정에서부터 매매 중개, 매매 전 대출 서비스(90일 이내 매매 미성사 시 무이자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테스트 중 시드투자(1.6백만달러) 유치를 시작으로, 테스트 종료 후 시리즈 A, B, C 대규모 투자 유치(총 83.2백만달러)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사례3] Nimbla - 2기 테스트 참여

- 님블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영국 중소기업에 다양한 무역신용보험 및 인보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기반 핀테크 기업
- 샌드박스 내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협력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중개회사로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테스트 종료 후 바클레이 액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2건의 투자유치에 성공

자료 : CB Insight(투자유치 내역),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참고

### 03. 영국 사례를 통해 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

- ◎ 세계적인 핀테크 허브인 영국의 산업의 성숙도나 금융 규제수준 등을 고려할 때,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를 직접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핀테크 관련 주요 지표 양국 비교

구분	영국	한국
핀테크 성숙도 <sup>8)</sup>	42% (세계 3위)	32% (세계 12위)
금융 자유도 <sup>9)</sup>	80점	70점
정부 금융규제 효율성 <sup>10)</sup>	세계 1위 (런던)	세계 14위 (서울)

자료 : EY(2017) ; Heritage Foundation(2019) ; Z/Yen Group & China Development Institute(2018)

- 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핀테크 성숙도, 금융 자유도, 정부 금융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
-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핀테크 생태계의 위상과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점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향후 2~3년간 주목해야 할 세계 주요 핀테크 허브 15곳<sup>11)</sup> 가운데 하나로 서울이 선정됨

8) Fintech Adoption Rate (Ernst & Young,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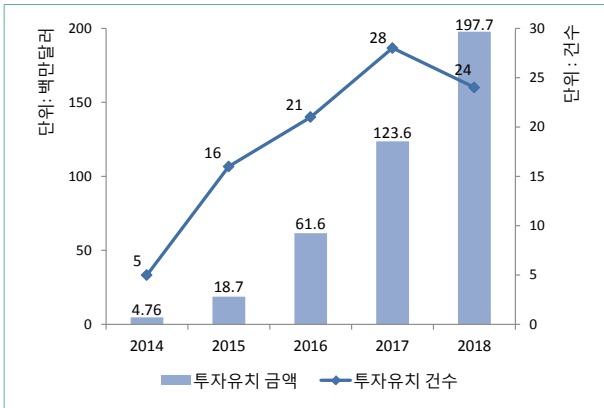
9) Financial Freedom Score (Heritage Foundation, 2019)

10)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4의 하위지표 중 정부 금융규제 평가항목(Z/Yen Group & China Development Institute, 2018)

11)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상하이, 칭다오, 구자랏 국제금융 테크시티(인도),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더블린, 홍콩, 청두, 카사블랑카, 베이징, 파리, 선전, 런던, 룩셈부르크, 서울(위의 책,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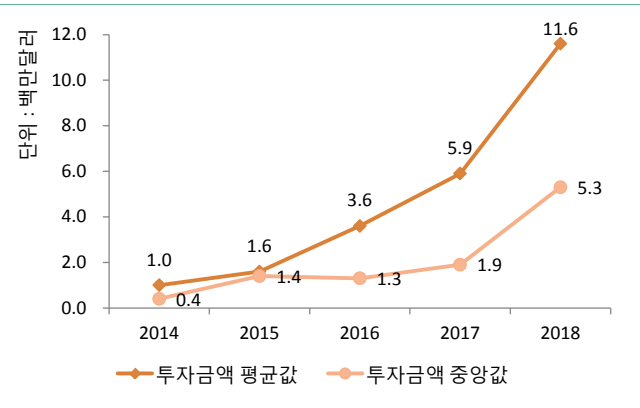
-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18년 기준 24건 1.98억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투자유치(1,996건, 403억달러)의 약 0.5%(금액 기준) 비중을 차지<sup>12)</sup>
  - \* 국내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금액의 전세계 대비 비중 추이(%) : ('14) 0.06→('15) 0.1→('16) 0.3→('17) 0.7→('18) 0.5
- 건당 투자유치 금액의 평균값과 중앙값<sup>13)</sup>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함

국내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동향



통계 : CB Insight('19.3.20)

국내 핀테크 기업 건당 투자유치 금액 평균-중앙값 추이



통계 : CB Insight('19.3.20)

◎ 영국 사례를 통해 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 분석

-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일차적 기대효과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규제당국과 참여 기업 간 합의된 통제 환경에서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 여기서 파생되는 이차적 기대효과는 기업, 규제당국, 투자자, 소비자 측면에서 분석 가능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경제주체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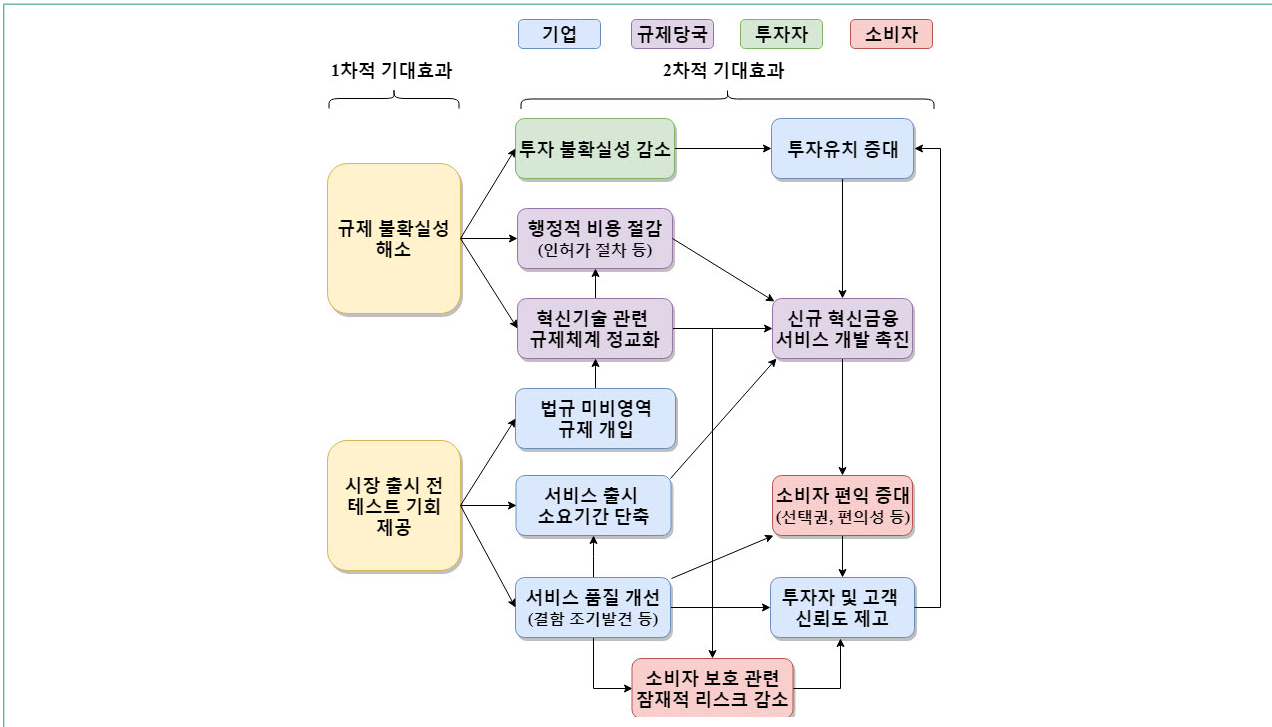
구분	기대효과	
기업	서비스 출시기간 단축	• 정식 인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테스트 기회 활용
	서비스 품질 개선	• 서비스 결함 조기발견, 이용자 피드백 수렴 등을 통한 미비점 보완
	투자유치 증대	•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시 투자자, 파트너사의 신뢰도 제고 •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의 상업성 검증 시 투자유치 가능성 증가 <sup>14)</sup>
	규제 개입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정비작업의 초기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가능
규제 당국	규제체계 정교화	• 혁신기술의 실제 적용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규제체계의 정교한 정비 가능
	행정적 비용 절감	• 핀테크 업계의 규제 개선 수요를 일괄적으로 파악 가능 • 테스트 성공사례 축적 시 유사 사업모델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새로운 혁신 촉진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투자자	투자 불확실성 감소	• 규제 및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용이해짐
소비자	소비자 편익 증대	•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향상
	소비자 피해위험 감소	• 서비스 정식 출시 후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 관련 잠재리스크 감소

자료 : 영국 금융감독청(FCA) 결과보고서('17.10)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12) 투자유치 규모는 벤처캐피탈 기반 자본투자를 기준(정부보조금, 대출, M&A, IPO는 제외)으로 집계함  
 13)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는 대개 소수의 대규모 투자 건에 의해 평균값이 대폭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특정 국가의 스타트업 투자유치 수준을 평가할 때는 투자금액의 중앙값도 함께 고려해야 함  
 14) 상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14년 13,000여건에서 '17년 6,000여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 (Mckinsey & Company, 2018)



##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주요 기대효과 관계도



자료 : 연구자 작성

- 인터뷰 결과, 국내 핀테크 업계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면서도 정부, 기업 및 이해당사자 간 원활한 협조와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전제될 때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

### ■ “기술 혁신 촉진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핀테크 산업 지원기관 관계자)

- 규제 샌드박스는 법 개정에 의한 일반적 규제 완화의 한계점<sup>15)</sup>을 보완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기업에는 혁신 서비스를 정식 출시 전에 운영해보는 기회를, 규제당국에는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교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상 또는 행정적 비용 감소

### ■ “적극 행정과 이해당사자간 합리적 합의점 도출로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핀테크 스타트업 A 대표)

- 여러 기술이 융합된 혁신 서비스는 복수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스트 및 출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상호 저촉 시 소관부처 간 신속한 협의와 합의점 도출이 필수
- 테스트 이후 정식 인허가 불발은 일종의 ‘사망선고’ 판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치명적 결함이 없다면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여부 등에서 부적격 판단 시 신중해야 함

### ■ “향후 해외진출에 대비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 필요” (핀테크 스타트업 B 직원)

- 단일 서비스의 성공을 토대로 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향후 사업영역 확장\*까지 감안한 규제 정비로 해외진출 경쟁력을 미리 제고해야 함
- 단,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등 자원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기반을 다진 후에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임

\* [사업영역 확장 사례] 영국 핀테크 기업 Revolut(시장가치 17억달러)는 단일 서비스(계좌 송금)로 사업을 시작하여 최근에는 복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주택담보대출, 암호화폐 환전, 보험, 자산관리 등) 구축을 추진 중

15) 법 개정에 의한 일반적 규제 완화는 절차상 소요기간이 길어 혁신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연시키고, 기존 틀을 유지한 채 규제 양을 감소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질적 개선이 어려움(안수현, 2018)

## 04. 결론 및 시사점

- ◎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운영과 기대효과 실현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인허가의 실효성 제고 여부에 달려있음
  - 관련 법령이 부재하거나 규제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부처 간 신속하고 명확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관건
    - 금융규제가 익숙하지 않은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검토
      - \* 영국은 기업별로 전담직원(case officer)을 지정하여 규제 자문, 인허가 절차 등 테스트 전반에 걸쳐 지원
      - \*\* 싱가포르의 보험중개업, 공인 금융상품 거래소, 송금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pre-defined sandbox)을 검토중('18.11)
  - 금융사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사는 엄격히 하되, 기타 심사기준이나 인허가 등에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혁신은 서비스를 도입할 때뿐만 아니라 테스트 중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창출될 수 있으므로, 혁신성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심사(의견청취) 시 이해당사자의 편익보다는 소비자의 편익을 우선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궁극적으로 기업 간 경쟁 촉진, 금융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함
- ◎ 기업은 정식 인허가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서 제도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하고, 정부는 글로벌 공조 등을 통해 사후지원을 강화해야 함
  - 비록 테스트 시 이용자 수와 범위가 제한되지만, 기업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와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의 완성도 제고 및 마케팅 전략 구체화에 힘써야 함
    - 또한 상호 추천 프로그램 등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인허가 심사 시 법령 제·개정 과정에도 적극 개입하여 향후 사업영역 확장의 법적 토대를 미리 확보해야 함
      - \* 금융위는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핀테크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와 상호 추천 프로그램(Referral Mechanism)을 운영하여 상대국 금융당국에 국내 핀테크 기업을 추천하고 인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컨설팅을 제공 중
  - 정부는 해외진출 희망기업이 해외 금융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혁신네트워크(GFIN)<sup>16)</sup>의 가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 \* GFIN은 핀테크 규제 '글로벌 샌드박스'를 구축하여 가입국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국경 간 금융혁신서비스 테스트(cross-border trial)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9년 2월 28일 파일럿 테스트 참가기업 모집이 마감됨
    - GFIN 가입 시, 국내 핀테크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내에서는 출시가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가능한 혁신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단, 국가별로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방식과 제한사항, 소비자 보호장치 관련 의무 등이 상이하므로 글로벌 규제 공조의 실효성과 참여 시 편익 및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16) GFIN(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주도 하에 '19년 1월 31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 미국(BCFP), 호주(ASIC), 홍콩(HKMA), 싱가포르(MAS), 두바이(DFSA), 이스라엘(ISA) 등 전 세계 29개의 금융감독기관이 가입하여 이중 17개 기관이 국경 간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 공조 중

##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2018.10.3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  
국제금융센터(2018.8.22), 주요국,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Sandbox 구축 추진  
금융위원회(2019.1.16), 「Fintech, 금융이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보험연구원(2018.12.24),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안수현(2018),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8.2),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한국금융연구원(2018.7.14),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  
CGAP(2017.10), Regulatory Sandboxes and Financial Inclusion  
Ernst & Young(2017), Fintech Adoption Index 2017  
Financial Conduct Authority(2017.10),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  
GFIN(2018), 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GFIN) Consultation document  
Heritage Foundation(2019), 2019 Heritage Index of Economic Freedom  
Mckinsey & Company(2018), Panorama Fintech 2018  
Z/Yen Group & China Development Institute(2018),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4  
[http://www.law.go.kr/법령/금융혁신지원%20특별법/\(16183\)](http://www.law.go.kr/법령/금융혁신지원%20특별법/(16183))  
<http://www.mas.gov.sg/News-and-Publications/Media-Releases/2018/MAS-Proposes-New-Regulatory-Sandbox-with-FastTrack-Approvals.aspx>  
<https://nested.com/>  
<https://tech.eu/brief/nested-raises-funding/>  
[https://www.better.go.kr/sandbox/define/sandbox\\_define.jsp](https://www.better.go.kr/sandbox/define/sandbox_define.jsp)  
<https://www.businessinsider.com/gfin-global-regulatory-sandbox-opens-for-applications-2019-2>  
<https://www.businessinsider.com/10-things-you-need-to-know-in-markets-today-october-24-2017-10>  
<https://www.coindesk.com/london-stock-exchange-leads-20-million-fundraise-for-blockchain-startup-nivaura>  
<https://www.gfsc.gg/commission/innovations/innovation-sandbox/gfin>  
<https://www.insuranceage.co.uk/technology/3285506/insurtech-futures-nimbla-selected-for-barclays-accelerator-programm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793b699-b88b-4381-8827-e3ff8ef673c1>  
<https://www.marketsmedia.com/fintech-nivaura-aims-at-us-and-asian-expansion/>  
<https://www.nimbla.com/>  
<https://www.regulationasia.com/global-innovation-sandbox-opens-for-cross-border-testing/>  
<https://www.revolut.com/>  
<https://www.uktech.news/news/investment-news/nested-raises-120m-change-uk-properties-sold-20181112>